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경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478호)
- 김민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624호)
- 전주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655호)

2021. 11. .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지 원

목 차

[정경희의원안]	1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김민철의원안]	8
I . 제안경위	8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III . 검토의견	10
1. 1개의 시·도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관위 설치규정 마련	10
2. 지방자치단체 종류 변경	14
3. 용어변경	15
[전주혜의원안]	18
I . 제안경위	18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
III . 검토의견	19

[정경희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경희의원 등 53인
2. 제 안 일 : 2021. 7. 12.
3. 회 부 일 : 2021.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도 각 근거 법률을 통해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임용·임명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illegible]

規定에 의한 당해 黨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당해 政黨과 그 下級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을 추천한 政黨이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渉團體를 구성하게 된 政黨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政黨에서 추천한 者가 委員으로 위촉될 때까지 在任한다. ⑫・⑬ (생략)	----- -----. ⑪ -----제8항----- ----- ----- ----- ----- -----. ⑫ 제8항----- ----- ----- ----- ----- -----. ⑬・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 위원의 임명을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위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자는 것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성·정치적 중립성 및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헌법」¹⁾ 및 「선거관리위원회법」²⁾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관위 위원에게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관위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음.

그리고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³⁾ 및 「법원조직법」⁴⁾에 재판관과

1) **헌법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2) **선관위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4)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중앙선관위 위원의 업무와 권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⁵⁾, 선거사무 등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고도의 업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어야 할 것임.

다만, 정당의 당원 등 국민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 중앙선관위 위원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타 법률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제5항은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선관위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그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그 적격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헌법 취지를 벗어나 위원 신분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중앙선관위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김민철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21.

3. 회 부 일 : 2021.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구분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대응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수원시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설치된 경기도청북부청사나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소방재난

본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의회북부분원 등의 기관들처럼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에,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듯이,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현행법상 시·도의 종류가 특별시·광역시·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하며,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Ⅲ. 검토의견

1. 1개의 시·도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관위 설치규정 마련

개정안은 1개의 시·도 안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생략)	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구·시(區가設置된市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u>구·시·군에는</u> 인구수·투표구수·교통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u>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u> 둘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u>시·도나 구·시·군에는</u> ----- ----- ----- ----- ----- ----- <u>시·도선거관리위원회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u> ----- -----.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	③ ----- -----

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u>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u>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u>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u> ⑤·⑥ (생략)	----- ----- -----<u>1개의 시·도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u>----- -----. ④ ----- ----- ----- -----<u>. 다만, 1개의 시·도나 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	--

경기도의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볼 때(표 1 참조), 수원시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미 설치된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의 기관들처럼 경기북부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도선관위를 둘 수 있도록 1개의 시·도 안에 2개 이상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현황

연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 인구수
1	서울	25	9,668,465
2	부산	16	3,391,946
3	대구	8	2,418,346
4	인천	10	2,942,828
5	광주	5	1,450,062
6	대전	5	1,463,882
7	울산	5	1,136,017
8	세종	—	355,831
9	경기	42	13,427,014
10	강원	18	1,542,840
11	충북	14	1,600,837
12	충남	16	2,121,029
13	전북	15	1,804,104
14	전남	22	1,851,549
15	경북	24	2,639,422
16	경남	22	3,340,216
17	제주	2	674,635
합계	17개	249 개	51,829,023

※ 자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바탕으로 재작성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수와 다른 행정기관의 예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제2의 선관위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경기북부 선관위 설치를 위해서는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재원조달의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민철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1개 추가설치(경기도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칭), 경기도 10개 시·군 관할 전제)할 경우,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59억원, 연평균 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총 재정소요 359억 중 청사 건축비용은 271억원 소요되며, 이에는 토지매입비 210억원⁶⁾, 공사비 58억원⁷⁾, 부대경비 3억 등임.

그리고 인건비는 88억원 소요되며, 신규채용 29명, 총원 106명 기준이며 정원 43명(비상근 8명 포함), 정원 외 63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참고 1) 국회예산정책처 선거관리위원회법 비용추계서 요약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로 경기도의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기도북부 선관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경기도의 행정구역 분리 없이 법 개정을 통해 1개의 시·도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정원·예산확보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6) 토지매입비 = 대지면적(4,500㎡로 가정) × 면적당 공시지가 평균가 4,659,000원으로 가정)

7) 공사비 = 연면적(청사 신축면적 2,615㎡로 가정) × 면적당 공시지가(1㎡당 2,213,000원으로 가정)

2. 지방자치단체 종류 변경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생략)	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구·시(區가設置된市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u>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u> (이하 “市·道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u>특별자치도</u> ----- -----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 ----- ----- ----- ----- -----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⁸⁾에 따라 시·도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시·도 등 세가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을 반영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됨.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3. 용어변경

개정안은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구·시(區가設置된市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	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

8)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참고 1】국회예산정책처 선거관리위원회법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복수 설치(안 제2조)

-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359억원, 연평균 72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복수 설치 (안 제2조)	23,144	3,935	3,033	2,884	2,925	35,921	7,18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624호,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전주혜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주혜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1. 9. 24.

3. 회 부 일 : 2021.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며, 비상임인 위원장을 대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대부분을 처리함.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특정 성향의 상임위원이 호선될 수밖에 없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第6條(常任委員) ① (생략)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第6條(常任委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위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전 3년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등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한 사람 및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임.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

-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전 3년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9)에 따라 설치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등 같은 법 제58조10)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위원

9)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舉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10)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임위원이 선임된다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이해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업무수행과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성·정치적 중립성 및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헌법」 11)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12)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13), 「법원조직법」 14)에 재판관과 법관의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진송하는 행위
- 11) **헌법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12) **선관위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13)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중앙선관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고 있음¹⁵⁾.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당의 당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참여 등 국민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의 마련과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타 법률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14)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15) **선관위법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선관위 위원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그 적격여부가 검증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상임위원의 소속 사무처 사무감독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되는 구조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중앙선관위는 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하였던 위원’의 경우에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제한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위원’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상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를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3